

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1. 4. 19.
복지도시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1. 4. 5. 마포구청장

나. 회부일자 : 2021. 4. 7.

다. 상정일자 : 제248회 임시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(2021. 4. 19.)
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도시안전과장

1) 제안이유

- 「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」이 개정되어 지역자율방재단원이 재난의 예방·대비·대응·복구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마련됨에 따라 이를 근거로 소집수당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.

2) 주요내용

- 소집수당 근거 신설(안 제8조)

3. 검토보고 (신준호 전문위원)

○ 조례 개정 배경 및 조문 검토

- 안 제8조의 신설되는 조항은 「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」 제61조 제2항, 제3항 개정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의 활동 지원을 위한 임무 수행의 활동수당 지급 근거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임.

○ 종합 의견

- 본 개정 조례안은 「자연재해대책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지역자율방재단의 실질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소집수당의 지급 근거가 마련되어 이를 반영한 것으로 상위법과의 구조적 정합성을 이루었음.

- 소집수당을 일반직공무원 9급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적용한 것은 서울특별시 참고 조례안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타지방자치단체 최근 조례 개정 사항을 조사해 본 결과 대부분 같은 것으로 파악됨.

[표 1. 지방자치단체별 지역자율방재단 소집수당 단가 개정 현황(4월 현재)]

구분	일반직공무원 9급	일반직공무원 7급
지방 자치단체	부산광역시 사하구(4hr) 대전광역시 동구(4hr) 오산시, 제천시, 여주시, 삼척시, 익산시, 안산시, 영암군, 무주군, 정읍시, 남원시, 통영시(4hr) , 남해군, 밀양시, 양평군, 하남시, 고창군, 의왕시, 영양군, 횡성군(4hr) , 목포시, 화성시	대전광역시 유성구(4hr)

- 다만, 수당의 단가기준을 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 2)으로 준용하였는데‘시간외근무수당 단가’는 적용하고 1일에 4시간, 1개월에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 제한 규정(1일 8시간 초과 금지)은 준용하지 않고 있어, 기존 적용의 합리성을 검토하기 위해 그동안의 지역자율방재단 활동내역 등을 통한 논의가 필요가 보임.
- 금번 활동 수당 지급사항의 개정으로 자율방재단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 활동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, 아울러, 자연재난 방재활동 참여 확대를 통해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생명 보호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.

[표 2. 지역자율방재단 현황(기능별, 동별)] (2021 현재)

(단위 : 명)

합 계	상황총괄반	현장예찰반	응급복구반	장비지원반	재난구호반	홍보반
316	39	68	69	38	74	28

(단위 : 명)

구 분	공 덕	아 현	도 화	용 강	대 흥	염 리	신 수	서 강
일 반	11	14	13	21	22	13	22	18
구 분	서 교	합 정	망원1	망원2	연 남	성산1	성산2	상 암
일 반	37	16	24	21	17	19	20	28

2)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(대통령령 제31590호)

제15조(시간외근무수당)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근무명령 시간은 1일에 4시간, 1개월에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8. 기타 : 없음